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2항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항”을 “영 제4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 별지 제12호 서

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 사항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신청			
	신청 사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검토 및 확인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통보

[별표 11]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신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신고내용	주주총회 결의 일자		부여 당시 시가(주식 가치)	
	년 월 일	1주당 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사항

연번	성명	계약의 형태	주식 수	취득·양도의 제한 및 조건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1호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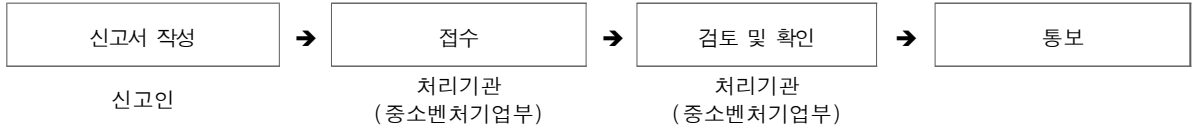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별표 12]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해지·해제 신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해지 []해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해지·해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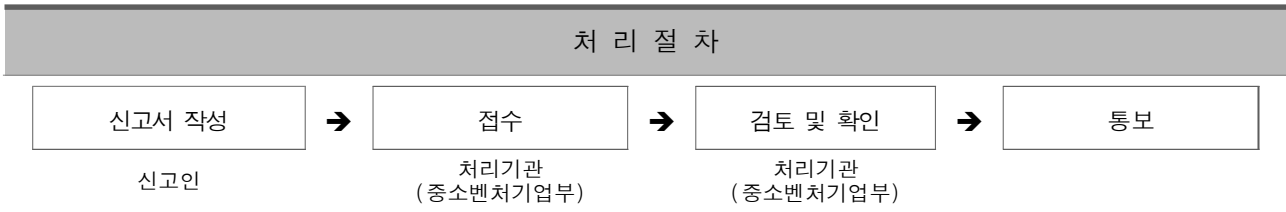
연번	성명	주주총회 일자	해지·해제 한 주식 수	해지·해제 사유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해지 []해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표 13]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자기주식 취득 사항

연번	일자	취득 상대방	취득한 주식의 수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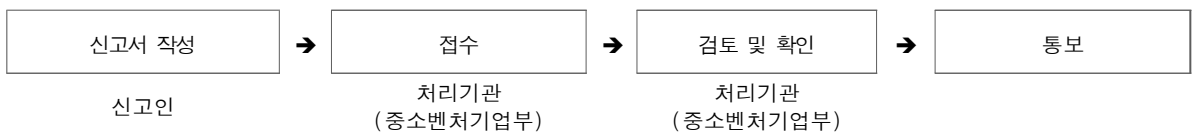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u>시행규칙</u> <u><신 설></u> 제4조의2(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u><신 설></u>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u>시행규칙</u> 제2조의2(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의 지정 신청) 「<u>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2항 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 식을 말한다. 제4조의2(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 · 제3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 조의1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 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u>체결한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u> 2. <u>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u> <u>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 별지</u> <u>제12호 서식</u> 3. <u>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u> <u>주식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u> <u>13호서식</u>
--	---